

인천광역시연수구인사위원회(채용등) 공고 제2025-42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 공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경력경쟁)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여 시행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5년 9월 22일

인천광역시연수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

임용직위	임용직급	임용인원	임용기간	담당(예정)직무
보건소장	지방과학기술 서기관 또는 일반임기제 (개방형 4호)	1명	2년	○ 보건소 운영 및 관리 총괄 ○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 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 주민건강증진, 구강건강, 영양관리 사업 및 보건교육 관한 사항 ○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 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 관리사업 ○ 난임의 예방 및 관리

※ 임용약정기간 만료일 이전에도 「지방공무원법」 제62조에 따라 임용약정 해지 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하게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2. 관련법령

- ☐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개방형직위)
- ☐ 「지역보건법」 제15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보건소장)
-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
- ☐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3. 임용신분

- ☐ 임용 당시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하여 해당 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 ☐ 임용 당시 민간인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임용약정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4. 응시자격요건

-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예정일)

구 분	내 용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응시연령	면접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인 자(2007.12.31. 이전 출생자)
성 별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단, 최종시험(면접)일 이후 1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의 경우 응시 가능
거 주 지	제한없음
국 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직무분야 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예정일)

-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소지자로서 다음의 경력요건 ① ~ ④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구 분		자격요건
경력 요건	① 학력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② 자격증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③ 공무원 경력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④ 민간 경력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범위 :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 관련분야의 근무경력은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 되지 않아야 함.

□ 경력기간 산정방법

- 전임근무의 경우 경력 전부를 인정(주40시간)

- 시간선택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

※ 예시) 4년간 주20시간 시간제 근무일 경우 경력기간은 2년으로 인정

5.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형식요건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의 범위 안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선발시험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포함), 내부의 응시자만 있는 경우 1회 이상 재공고함.

※ 상기 사유로 재공고 시 당초 응시자는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응시원서 접수자로 갈음함

□ 2차 면접시험(적격성심사)

-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질의응답식 개별면접 실시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요건(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증
- 면접위원들의 평정점수를 평균한 결과 만점의 70% 미만시 불합격 처리,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 연수구 홈페이지 채용공고 확인(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예정)
- 임용후보자 등록 후에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임용자격 부여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 접수기간: 2025. 10. 13.(월) ~ 10. 17.(금) 09:00 ~ 18:00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접 수 처: 연수구청 2층 총무과(인사팀)

※주소: (21967)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2층 총무과(인사팀)

□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 연수구청 1층 민원여권과에서 응시수수료(1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연수구 수입증지를 구입 후 응시원서에 부착하여 접수

※ 타인이 응시원서 제출 가능, 단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등기우편) 우체국에서 응시수수료(1만원)에 상당하는 우편통상환을 구입 후 응시원서에 동봉하여 접수(택배, 퀵서비스는 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 시 접수마감일 우편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우편봉투 겉면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응시원서” 표기

※ 대리접수 또는 등기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한 경우 응시자 본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응시번호를 전송하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전날까지 응시번호를 미수신한 경우 전화(☎032-749-7173)로 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민법」 제4조에 따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는 수입증지(우편통상환)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할 경우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시험일정 **※기관 사정 및 시험여건에 따라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면접시험 예정일	최종합격자 발표 예정일	임용예정일
2025. 10. 23.	2025. 10. 29.	2025. 11. 07.	2026년 1월 중

※ 면접시험 예정일은 응시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기준일이며, 정확한 면접일정과 최종합격 여부 등은 반드시 연수구 홈페이지 채용공고에서 개별적으로 확인

7.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 응시원서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 ※ 응시수수료 : 10,000원(연수구 수입증지 또는 우편통상환)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이력서는 응시자격요건(자격증, 경력, 학위)에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이력서에 기재한 자격증, 경력, 학위는 반드시 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불인정)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 A4용지 6매 이내로 작성
5. 동의서 각 1부 (별지서식 제5호~제7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6.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1부 (별지서식 제8호)	· 응시자 본인이 해당하는 자격요건 괄호에 표시하여 제출 (중복표시 가능)
7.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항만 제출
8. 학위 논문 요약서 1부 (별지서식 제9호)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항만 제출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9. 경력(재직)증명서 1부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항만 제출 · 경력(재직)증명서에는 근무기간(연·월·일), 주당근무시간, 직위(급), 담당업무, 발행기관의 직인, 발급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해당 기재사항 미포함 시 발급담당자가 수기 기재 가능 · 프리랜서, 시간제근무, 비상근직 등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직장 폐업·파산·합병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추가 입증자료(①~③)를 첨부하여 제출함 ※ (추가 입증자료) ①근로계약서(담당업무 포함) ②소득금액 증명서(보수입금내역) ③국세청 폐업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10.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에서 발급 가능 · 응시자가 “직장가입자”로 표기된 내역만 출력
11.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항만 제출

8. 근로조건

□ 보 수

-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 시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으로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수당 지급
-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 시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개방형 4호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하한액의 130% 범위 내에서 책정 가능

구 분	연봉등급	연봉액(천원)	
		상한액	하한액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	개방형 4호	-	68,106

※ 연봉 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별도 지급함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복 무

- 복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따름

9. 응시자 유의사항

- 연수구(인천광역시연수구인사위원회)에서 동일 회차 및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응시희망자는 응시 자격요건, 근로조건 등을 숙지하고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해드립니다.
- 자격요건 해당여부 및 응시서류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1차 서류 심사 시 제출서류 발급기관에 검증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는 불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사전 반환신청 후 본인이 방문할 경우에 반환합니다.
- 채용심사과정에서 해당 직위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초 채용예정인원 등에도 불구하고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응시자격 검증,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 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56조에 따라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므로 기존 영리·비영리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각종 증명서 및 기재된 내용의 오류, 착오,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 시험일정, 장소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연수구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구 분	담당부서	연 락 처
임용절차 문의	총무과(인사팀)	☎ 032-749-7173
담당직무 문의	보건행정과(보건행정팀)	☎ 032-749-8021
	건강증진과(건강도시팀)	☎ 032-749-8121
	감염병관리과(감염병정책팀)	☎ 032-749-8011
	치매정신건강과(치매정책팀)	☎ 032-749-8931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사업팀)	☎ 032-749-6912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예 : 보건소장)

3.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 지방과학기술서기관)

4. 성명 · 생년월일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7. 수입증지 : 연수구 민원여권과에서 아래 해당 금액의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붙이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로서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주 의 사 항 >>

- ①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관인 날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②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험일 전날까지 접수처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③ 시험당일은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랑랑자가 기재	응시 분야	보건소장	성 명	

나. 응시자격 ※ 해당란에만 기재				
자 격 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자격요건 자격증만 기입			
병 역	군필여부	최종계급	비 고	
	ex) 군필 / 면제 / 해당없음			
경 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자격요건 경력만 기입			
학 위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종류	
	학교명은 기재하지 말것			

다. 응시취지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별지 제3호 서식]

자기 소개서

○ 임용분야 : 보건소장
○ 성 명 :
20 년 월 일 작성자 ○ ○ ○ (서명)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성장과정, 경력 및 직무성과 등을 위주로 작성하고 작성일, 작성자명 및 서명 기재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하고 문서작성 프로그램(한글 등)을 사용하여 작성

※ 유의사항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직무수행 계획서

○ 응시분야 :

○ 작 성 자 :

※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채용예정 분야의 담당직무 내용을 참고하여 직무수행 목표 및 방향, 추진방안 및 계획(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작성순서는 표지(응시분야, 작성자 성명 기재), 목차, 본문 순으로 작성
- 분량은 A4용지 6매 이내로 하고 문서작성 프로그램(한글 등)을 사용하여 작성

※ 유의사항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번호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u>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 확인 및 심사자료</u>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u>성명, 주소, 경력, 연락처, 자격증, 병역사항 등</u>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u>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채용절차 종료 시까지 보유·이용되며, 채용절차 종료 후에는 공공기록물 보존기간에 따라 보관</u>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u>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 확인 및 심사자료</u>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u>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u>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u>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채용절차 종료 시까지 보유·이용되며, 채용절차 종료 후에는 공공기록물 보존기간에 따라 보관</u>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20 년 월 일 성명 : (인)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임용권자 및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시행하는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증명서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증명서 발급기관)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기간
각종 증명서 발급기관	증명서 진위 확인	각종 증명서 사본	자료 제공(확인) 후 즉시 파기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인천광역시연수구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 응시자 본인이 해당하는 자격요건 괄호에 “○” 표시하여 제출 <중복표시 가능>

자 격 요 건		
필 수 요 건		○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소지자()
경력요건 (하나 이상 해당자)	학 력 기 준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자격증 기 준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공무원 경력 기 준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 간 경력 기 준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응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9호 서식]

학위 논문 요약서(석사·박사)

☐ 학위논문 주제

가. 석사논문

- 제 목 :
- 학위수여일 :
- 주 제 :
- 내용 요지(간략하게 10줄이내)

나. 박사논문

- 제 목 :
- 학위수여일 :
- 주 제 :
- 내용 요지(간략하게 10줄이내)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